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임 찬 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590410-1560010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96번길 20, 203호 (복정동) (현 거주지)			
직 업	LPN로컬파워뉴스 법조팀장 (前 검찰수사과장)	사무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94길 13(역삼동) 예일파트빌딩 4층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 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1) 김진욱	주민등록번호	(1) 불상
	(2) 김수정		(2) 불상
주 소	각 불 상 (현 거주지)		
직 업	(1) 공수처장	사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2) 공수처검사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사건 전개 및 배경 》

고소인은 2021. 1. 28.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검사 김훈,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 등이 2012. 7.경부터 2014. 3.중순경까지 약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 내지 편취하기 위해 검찰수사권을 남용한 일명 ‘검사비리사건’ 등에 대한 고소장¹⁾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접수시키고 접수번호 47번의 접수증을 교부받았다.(첨부 1)

위 ‘검사비리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정의를 세우는데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1) 공수처 접수번호 47번인 이 고소장에는 위 ‘검사비리사건’ 이외에 피고소인 성영훈에 대한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 상당 소송사기 미수사건, 피고소인 주관용에 대한 무고사건, 피고소인 성영훈, 임창호, 허승진에 대한 소송사기사건, 피고소인 황교안에 대한 위 ‘검사비리사건’ 방조사건, 피고소인 김진태 및 임정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위 ‘검사비리사건’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김진욱 및 공수처검사 김수정의 직책을 언급하고자 한다.

지목되어 온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건이자, 검사들의 권력형비리사건이며, 사건조작을 통하여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려는 대형 부정부패사범이며, 국가기관인 검찰조직을 악용한 국기문란사범이며, 실세 검사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뱃속을 채우기 위해 우월한 권한에 터잡아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수사사무관의 수사권을 짓눌러버린 사범 쿠데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소인은 위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민갑룡 경찰과 윤석열 검찰이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위 공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거쳐 허위내용의 송치의견서 및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각각 작성하는 수법으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²⁾해 버린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시킨 후 접수번호 46번의 접수증을 교부받았다.(첨부 3)

고소인은 2021. 4. 21. 피고소인 김부겸이 2019. 9. 19.경 행안부장관 재직 당시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자신의 휘하에 있는 민갑룡 경찰의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를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접수시키고, 유선전화를 통하여 그 접수번호가 909번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3건 고소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히 100% 입증이 가능 하계끔 증거 자료를 촘촘하게 첨부해 놓았고, 이를 수사하여야 하는 공수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사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단기간내 각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하여 곧바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입증자료 :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및 거기에 첨부된 증거자료 (첨부 4),

2)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는 2020. 3. 30.자 고소인 명의의 항고장(첨부 2)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 고소장 및 거기에 첨부된 증거자료 (첨부 5), 피 고소인 김부겸의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 고소장 및 거기에 첨부된 증거 자료 (첨부 6))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서는 2014. 7. 31.자 고소장(별권 책자 제 31~56쪽)이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 휘하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제출된 이래로 박근혜 정부 휘하 김진태 검찰에서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차례 은폐된 사실이 있고, 위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휘하 각급 법원에서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 으로 3차례 은폐된 사실이 있다.(입증자료 : 별권 책자 1권, 2015. 4. 15. 발행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책자, 출판사 정의로운 세상, 총 851면)

한편, 공수처장 김진욱은 공수처 제1호 사건 선정과 관련, 2021. 4. 19.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가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 될 것”이며,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이 아니라, 공수처로 접수된 사건 중 1호 수사사건을 찾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첨부 7)

그러나, 공수처는 2021. 4. 28.경 공수처장 김진욱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 1호 사건을 선정하겠다는 당초 답변과 달리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을 억지로 끌고 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반해, 공수처는 2021. 5. 6.경 그 동안 치외법권으로 여겨져 왔던 판·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100%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공수처에 직접 접수한 위 검사비리사건 등 3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입건’ 결정을 하지 않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 및 검찰에 ‘단순이첩’ 결정을 하였다.³⁾

【피고소인 김진욱, 피고소인 김수정의 공동범행】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수처 접수번호 제47호인 위 검사비리사건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와 실제 검사들이 공모하여 범죄 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 내지 편취하기

3) 공수처가 고소인에게 통지한 ‘수사처수리(내사)사건 처리결과 통지’ 안내문에 의하면, 사건 이첩의 경우에는 2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즉,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처(공수처)가 추가조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건’으로 분류하고, 해당사건이 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이첩’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고소인이 공수처에 제출한 위 검사비리사건 등 3건의 고소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처(공수처)의 설립취지에 100% 부합하는 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 및 이를 은폐한 고소사건은 수사처가 기소권까지 갖고 있음), 이미 경찰 및 검찰에서 수차례 은폐한 전력이 있어 수사처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 더군다나 위 3건의 고소사건 중 피고소인 김부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고소사건은 검사들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므로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경우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공수처)가 위 검사비리사건 등 3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입건’ 결정을 하지 않고, ‘단순이첩’ 결정을 했다는 의미는 위 검사비리사건 피고소인인 성영훈 일당은 물론,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 각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모든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즉 전자와 후자가 각각 동일한 의미다.

위해 검찰수사권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점, 이로 인해 공수처 설립 취지에 100% 부합하는 수사대상 사건이라는 점,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점, 박근혜 정부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경찰 및 검찰에 이르기 까지 검·경이 서로 짜고 수차례에 걸쳐 은폐해 버린 사건이라는 점⁴⁾, 공소 시효까지 임박한 사건이라는 점⁵⁾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 절대 이첩해서는 안된다.

또, 공수처 접수번호 제46호인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 역시 박근혜 정부 경찰 및 검찰은 물론, 문재인 정부 경찰 및 검찰에 와서도 검·경이 서로 짜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소위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통해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점⁶⁾, 이로 인해 공수처 설립 취지에 100% 부합하는 수사대상 사건이라는 점,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검찰에 절대 이첩해서는 안된다.

또, 공수처 접수번호 제909호인 피고소인 김부겸의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 역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점, 이로 인해 공수처 설립 취지에 100% 부합하는 수사대상 사건이라는 점, 피고소인

4)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첨부 책자 및 2020. 3. 30.자 고소인 명의의 항고장 (첨부 2), 그리고,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및 거기에 첨부된 수많은 증거자료(첨부 4) 각 참조

5) 이 점에 있어서는 공수처에 제출한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표지에도 기재해 놓았다. (첨부 4)

6)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첨부책자 및 2020. 3. 30.자 고소인 명의의 항고장 (첨부 2), 그리고,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 고소장 및 거기에 첨부된 수많은 증거자료 (첨부 5) 각 참조

김부겸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였던 행정안전부장관 재직 당시 발생하였던 사건이라는 점, 피고소인 김부겸의 신분은 현재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까지 올라와 있어 일개 경찰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⁷⁾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 절대 이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위 검사비리사건 등 3건의 고소사건을 입건⁸⁾하여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첩하는 방식을 취해 사실상 은폐함으로써 성영훈 일당 등 해당 피고소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면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들은 2021. 5. 6.경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청사 5동에 있는 공수처 피고소인 김수정 사무실에서, 위 3건의 고소사건 중 위 검사비리사건(접수번호 47호) 및 피고소인 김부겸의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접수번호 909호)에 대해서는 경찰에,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접수번호 46호)에 대해서는 검찰에 각각 단순히첩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직권을

7) 경찰에 절대 이첩해서는 안되는 이 모든 사유들은 피고소인 김부겸의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 고소장을 대충 훑어보더라도 자세히 알 수 있다.(첨부 6)

8) 공수처가 고소인에게 통보한 ‘수사처수사(내사)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입건’의 개념에 대하여, “공직범죄사건으로서 접수하여 직접수사를 개시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조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수사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이첩’의 개념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용하여 고소인이 공수처로부터 위 3건의 고소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9)

나. 직무유기죄

공수처법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에 의하면,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3건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입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 및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첩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피고소인들은 사실은 위 3건의 고소사건이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고 위 가항에 기재된 이유로 인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첩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9) 실제 공수처로부터 위 검사비리사건(공수처 접수번호 47) 및 피고소인 김부겸의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공수처 접수번호 909호)을 단순히첩 형식으로 이송받은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 수사를 거부한 채 공수처에 반납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위 2건의 고소사건들은 공수처로부터 경찰청 본청,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성남수정경찰서로 이송되었던 바, 동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백승화 수사관(직급:경사)은 2021. 5. 31.경 고소인과의 통화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토의를 해보고 고민도 수없이 해왔다. 증거관계가 명백한 데다가 경찰의 힘으로 권력형 검사비리사건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없다. 특히 현 국무총리는 더욱 그렇다. 결국, 공수처가 위 2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조작하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불법 지시에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위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이송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2021. 6. 12.자 LPN 로컬파워뉴스 기사 참조, 첨부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위 3건의 고소사건 피고소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면해 주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 김수정 명의로 작성된 ‘수사처수리(내사)사건 처리결과 통지’라는 공문서상 ‘결정결과’란에 사실은 위 3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의 ‘입건’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첨부자료와 같이 ‘단순이첩’이라고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¹⁰⁾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3건의 고소사건에 대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라. 허위공문서행사죄

피고소인들은 전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공문서를 그 즉시 피고소인 김수정 사무실에 비치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접수번호 47번(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공문서(첨부9), 접수번호 46번(검사 비리사건 은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공문서(첨부 10), 접수번호 909번(피고소인 김부겸의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공문서(첨부 11)

5. 고소이유

이 사건 핵심요지는 문재인 정부 및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한 공수처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공수처 설립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사건’을 수사중에 있던 경찰에서 끌고 와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그 대신에 검사들의 총체적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 검사비리사건 등 3건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이첩이라는 형식을 빌려 은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공수처는 제1호 사건 시작부터 불법적인 수사기법인 선택적 수사를 통해 공수처 설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즉,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3조의 규정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선택적 수사를 통해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적폐이자 보편적 사법정의를 실현시킬 수 없는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의 기원은 형사사법 권력을 가장 많이 쥐고 있었던 우리나라 검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및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형사사법 권력이 검사에게 부여된 이래로 선택적 수사를 통해 청와대

등 살아 있는 정치권력에는 충성과 아부를, 죽은 정치권력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는 막강한 검찰권력을 남용하고, 전관예우 및 사건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정축재를 해 온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치고는 참으로 역겹고 더러운 조직이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은 고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전관예우 등을 통하여 사건을 은폐 또는 무마해 버리면서, 미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수사, 청탁 수사, 보복수사로 나아갑니다.

즉,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은 국가적 운명을 좌우할 정치적인 사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피해가 수반되는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이를 은폐해 버리기도 하고, 과잉수사 등 수사권 남용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¹¹⁾

공수처는 고소인이 제출한 위 검사비리사건 등 3건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과거 우리나라 검찰이 걸어온 선택적 수사를 통해 은폐해 버림으로써 공수처의 존립 기반은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선택적 수사를 실시해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집권자의

11)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자세하게 파헤친 신문기사로는 2021. 6. 1.자 “왜 우리 국민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꼭 이뤄야만 하는가?” 제하의 LPN로컬팝워뉴스 신문기사 참조(첨부12)

권력 강화 및 정적 제거용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공수처는 과거 검찰이 해 온 방식처럼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미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과잉수사, 청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보복수사 등으로 대응하고, 고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불입건 수사, 뭉개기식 수사, 봐주기식 수사, 사건은폐를 위한 조작수사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위 검사비리사건 등 3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선택적 수사를 실시하여 사건 자체를 은폐해 버린 공수처장 김진욱 및 담당 검사 김수정에 대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이로 인해 당초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공수처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 수사방향 및 초점은 위 ‘4항 범죄사실’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수처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위 검사비리사건 등 3건의 고소사건을 수차례에 걸쳐 은폐 전력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이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후 인물은 누구인지, 한단계 건너 뛰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연고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이 모든 사항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써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가 근절되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사법정의실현을 위한 국가 수사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김창룡 경찰에 제출해야 할지, 김오수 검찰에 제출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고소장에 언급되고 있는 위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에 대해 과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서로 짜고 지금까지 은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는 검찰과 공수처가 ‘전 중앙지검장 이성윤에 대한 황제조사’ 및 ‘김학의 불법 출금’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 외압’ 등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아무래도 김오수 검찰이 공수처장 김진욱 및 검사 김수정의 범죄에 대해 김창룡 경찰 보다 더 수사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니, 김오수 검찰에서는 피고소인들이 막 출발한 공수처의 설립근거를 무너뜨려버렸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 가장 나쁜 선택적 수사기법을 사용하여 사건을 은폐함으로써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버렸다는 점 등을 들어 전원 구속 수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김오수 검찰에서는 이전의 윤석열 검찰처럼 이 사건 수사를 수사준칙에 규정된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지 않고 지금껏 해 온 방식대로 소위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통해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또다시 사건을 은폐해 버린다면, 김오수 검찰 역시 범죄집단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을 것이며, 결국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한 사건조작 행위는 두고 두고 온 국민과 역사 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역적으로 남을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1년 6 월 21 일*

고소인 임 찬 용 (인)*

제출인 _____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검찰청 귀중

첨부(입증)자료

1. 공수처 접수번호 47번 사건접수증
2. 2020. 3. 30.자 고소인 명의의 항고장
3. 접수번호 46번 사건접수증
4. 검사비리사건 등 고소장
5.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 고소장
6. 피고소인 김부겸의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 고소장
7. 2021. 4. 19.자 JTBC 뉴스 기사 1부.
8. 2021. 6. 12.자 LPN로컬파워뉴스 기사 1부
9. 공수처 접수번호 47번(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공문서 1부.
10. 공수처 접수번호 46번(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 공문서 1부.
11. 공수처 접수번호 909번(피고소인 김부겸의 검사비리사건
은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공문서 1부.
12. 2021. 6. 1.자 LPN로컬파워뉴스 기사 1부.

첨부책자 1권 :

(제19대 대선 결정판) 사법정의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2017. 4. 15. 발행, 출판사 : 정의로운 세상, 총 851면)

